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우리 농협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우리 농협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농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농협 팩스 (033-378-0084) 또는 이메일 (nh315012-1@nonghyup.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농협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확정일로부터 14일간 채용서류를 보관 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33-370-62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양식은 예미농협 홈페이지(yemi.nonghyup.com)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024. 03. 11.



예미농업협동조합

